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34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재섭·김위상·안철수
엄태영·신동욱·서천호
강승규·이헌승·이성권
김기현·조은희·강명구
최수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명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

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를 “공개기간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③ ~ ⑦ (생 략)	<u>날까지로 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	-----------------------------------